

##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과 달리 사무국 설치의 근거 규정이 없어, 시설물 사고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사고 발생 모니터링, 사고조사 계획 수립, 사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무국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발생 모니터링, 사고조사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사고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 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규정하여 사고조사의 중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 다. 현장조사 시 시설물 관리주체 책임자에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의무를 부여함(안 제22조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영위탁기관”이란 시설물안전법 제60조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4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사고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21조를 제23조로 하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운영위탁기관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

1. 위원단 구성 및 관리
  2. 시설물사고 발생 모니터링
  3. 개략적인 사고원인, 피해규모 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초기 현장조사
  4. 시설물사고 조사계획 수립 지원
  5. 시설물사고의 정보수집,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6.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
  7.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8. 시설물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9. 시설물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0.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안전대책)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자는 시설물사고현장조사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방지나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7조(종전의 제24조)제2항 중 “위원”을 “위원은”으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조사기한) 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2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원증

사진	○ ○	제 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원증	
○ 조사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시설물사고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임명기관장	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용어 정의)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운영위탁기관”이란 시설물 안전법 제60조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4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u></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p><u>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u></p> <p>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u></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u></p>

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사고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장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신 설>

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장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제16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운영위탁기관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

1. 위원단 구성 및 관리
2. 시설물사고 발생 모니터링
3. 개략적인 사고원인, 피해규모

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  
성 검토를 위한 초기 현장조  
사

4. 시설물사고 조사계획 수립  
지원

5. 시설물사고의 정보수집,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6.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  
동의 지원

7.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8. 시설물사고 예방을 위한 점  
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9. 시설물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0.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  
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7조 ~ 제21조 (현행 제16조부  
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6조 ~ 제20조 (생략)

<신 설>

제21조 (생 략)

<신 설>

제22조 · 제23조 (생 략)

제24조(비밀준수) ① (생 략)

② 위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대책)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자는 시설물사고현장 조사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방지나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4조(조사기한) 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2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 제26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제27조(비밀준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  
-----  
-----.